

의안번호	2214164
의 회 인	정동만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7.
추계번호	25A5094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제1항 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	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. <u>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</u> 2. 전략산업등의 영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<u>사용료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제1항 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12 곳으로,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 산업에 대하여 특화단지가 지정되었고 각 단지별로 2~218개 기업이 입주하였음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 가능성이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방식, 대상기관, 지원금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~2025년까지 특화단지 조성 단계에서 현행법 제20조¹⁾에 따라 도로, 전력, 용수, 폐수, 지하관로 설치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나, 제21조제1항²⁾ 및 제22조³⁾에 따라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내역은 2025년 10월 기준 부재함

* [참고자료 2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지원내역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
- 1) 제20조(특화단지 조성·운영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·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1.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
 2.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·허가·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④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⑤ 정부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제21조(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1. 전략산업등에 관련된 설비투자,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
 2. 그 밖에 입주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- 3) 제22조(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내 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단지 입주기관(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)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
 2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 3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
 4. 「초지법」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 5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

(2025.10월말 기준)

지역(분야)	입주기업·기관	비고(주요내용, 단지 설명 등)
용인·평택 (반도체)	(2개 기업) 삼성전자, 린데코리아	- 메모리 세계1위 수성, 시스템 점유율 10%로 확대 (용인일반산단) SK하이닉스 및 관련 소부장 기업 등 50개 이상 분양계획 (용인국가산단) 삼성전자 및 관련 소부장 기업 등 60개 이상 분양계획
구미 (반도체)	(92개 기업) SK실트론, LG이노텍, 원익큐엔씨, 삼성SDI 등	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
청주 (이차전지)	(40개 기업) LG에너지솔루션, 에코프로 등	리튬황·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
포항 (이차전지)	(19개 기업) 에코프로, 포스코퓨처엠 등	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
새만금 (이차전지)	(9개 기업) 성일하이텍 등	핵심광물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
울산 (이차전지)	(16개 기업) 삼성SDI, LSMnM, 고려아연 등	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
천안·아산 (디스플레이)	(218개 기업) 삼성디스플레이 등	OLED 초격차 확보,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
인천·시흥 (바이오)	(125개 기업)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, 에스티팜, 일동제약 등	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
대전 유성 (바이오)	(107개 기업) 리가켄바이오 등	혁신신약 R&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
춘천·홍천 (바이오)	(116개 기업) 유바이오로직스 등	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 거점
전남 화순 (바이오)	(33개 기업) GC녹십자, 박셀바이오,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	백신주권 확보 및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
안동·포항 (바이오)	(62개 기업) SK바이오사이언스, SK플라즈마, 코리포항 등	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

자료: 산업통상부, 각 지방자치단체

[참고자료 2]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지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지원대상	지원금액	내용
2023년	용인·평택 반도체특화단지	100,000	○ 용인(전력·용수, 500억원) ○ 평택(전력·용수, 500억원)
2024년	구미 반도체특화단지	39,156	○ 구미(도로, 200억원)
	울산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울산(전력, 37.5억원)
	포항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포항(용수, 154억원)
2025년	용인·평택 반도체특화단지	142,221	○ 용인(폐수, 500억원) ○ 평택(전력, 500억원)
	포항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포항(염처리수지하관로, 120억원)
	청주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청주(전력, 58.6억원)
	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새만금(전력, 173.6억원)
	울산 이차전지특화단지		○ 울산(도로, 70억원)

자료: 산업통상부